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8 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:홍성국·김민기·이형석

강선우 · 김영배 · 김경만

이상직 · 김민석 · 이성만

박성준 · 윤재갑 · 정태호

김회재 • 아주(비) • 이워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(2021.3.25. 시행예정)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·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.

한편,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2021.5.20. 시행예정)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.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,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10조 및 제15조).

법률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제5조의3 및 제5조의4"를 "제5조의3·제5조의4 및 제8조"로 한다.

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(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
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중 "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"를 "제5조의3, 제5조의4 또는 제8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금융정보분석원) ① 다음	제3조(금융정보분석원) ①
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	
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	
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	
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조・제4조의2・제5조・	2
제5조의2ㆍ <u>제5조의3 및 제5</u>	<u>제5조의3</u> ·제5조의4
<u>조의4</u>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	<u>및 제8조</u>
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	
및 검사	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	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
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	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
률 일부개정법률	률 일부개정법률
제10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	제10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
제공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	제공) ①
불법재산・자금세탁행위 또는	
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	
된 형사사건의 수사, 조세탈루	
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	
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,	
관세 범칙사건 조사, 관세탈루	

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「정치자금법」 위반사건의 조사,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(이 하 "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"이라 한다)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특정금융거래정보"라한다)를 검찰총장, <u>행정안전부 장관</u>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⑫ (생 략)

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

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저 등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의 2, <u>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</u>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, 감독에 필요

<u>행정안전부</u>
장관(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
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
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
경유하여야 한다. 이하 같다)-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
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
률 일부개정법률
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・검사
프) ①
제5조의3, 제5조의4 또는 제
8조